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8. 2. 14.(수) 09:32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효성 위 원 장
허 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2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8년 제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5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제6차 및 제7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4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중 <의결안건 가>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과 <의결안건 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하고, 나머지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3건은 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가>와 <의결안건 나>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고, 그 외 안건은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자보호국, 방송기반국 및 기획조정관의 안건 순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보고사항

나. SK텔레콤㈜ 재정사건에 대한 알선분과위원회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이용자정책국 소관인 <보고안건 나> 'SK텔레콤㈜ 재정사건에 대한 알선분과위원회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사유입니다. 이 건 재정 신청인과 SK텔레콤 간의 이동전화서비스 계약 관련 분쟁의 합의 중재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46조에 따른 알선을 진행하였으나, 한쪽 당사자가 알선(안) 수용을 거부함에 따라 알선을 중단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 사항입니다. 2017년 10월 16일 신청인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서에 제출하였으며, 신청 취지는 청각장애인인 신청인에 대해 SK텔레콤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복지요금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부가서비스 강제 가입 요구한 건에 대해 손해배상금 2억 2,700만원을 지급하도록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안건 상정 전에 원만한 분쟁조정을 위해 2017년 12월 13일 알선분과위원회를 재정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에 따라 이용자정책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법률전문가 1인, 소비자 전문가 1인 총 3인으로 구성하고, 2017년 12월 21일 15시 30분부터

17시까지 알선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알선분과위원회는 신청인의 대리인 및 SK텔레콤 관계자 4명이 참석하였으며, 쟁점별로 양 당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의견청취 내용은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알선(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알선(안) 세부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선 결과입니다. 양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알선(안)을 마련하여 양 당사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수용거부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재정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에 의거 알선을 중단하고 재정절차를 재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허 욱 부위원장**

- 이 건 자체가 곧바로 최종 의결사항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럼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다. SK텔레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손해배상 재정에 관한 건 (2018-08-049)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다> ‘SK텔레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손해배상 재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제안이유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재정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알선분과위원회에서 알선(안)을 제시했으나 거부된 사항과 관련된 사항을 재정안건으로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신청 취지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동전화서비스 개통과 관련하여 계약서 미교부, 장애인 복지요금 할인 미적용, 부가서비스 강제 가입 요구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2억 7,576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초 신청대리인은 최초 재정신청 시에는 2억 2,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알선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손해배상을 2억 7,576만원으로 변경하는 서류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요경과입니다. 신청인은 2017년 4월 18일 피신청인의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6월 29일 신청인의 부(父) 대리인은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불만을 제기하고 과기정통부에 민원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10월 16일 방통위에 재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2월 21일 알선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알선(안)을 제시했으나

대리인은 알선(안) 불수용 의사를 표현함에 따라 재정안건으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쟁점입니다. 신청인의 주장 계약서 미교부, 복지할인 적용 누락, 부가서비스 강제가입 요구, 손해배상 및 피신청인의 주장, 이에 대한 답변사항은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판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서 미교부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약관위반을 적용하여 2017년 12월 8일 시정명령을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위법행위는 확인되나, 신청인이 청구한 정신적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인정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할인 적용 누락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복지할인 미적용으로 일반요금이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이 기 납부한 요금 중 할인액에 대하여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부가서비스 강제가입 요구와 관련하여 강제여부에 대해 각 당사자가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확인이 곤란하나, 피신청인이 고객 불편 초래 등을 고려하여 기납부한 이용료의 경우에 반환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수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대리인이 시간 손실, 정신적 스트레스, 시험 불합격 등을 이유로 2억 7,576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것은 신청인이 아닌 대리인에 대한 손해로 보이고, 대리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그 외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는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등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복지할인 누락, 부가서비스 강제가입에 대하여 사업자 제재 처분을 요청한 사항은 재정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제1항에 의거 재정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하고자 합니다. 결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장애인 복지할인을 즉시 적용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7년 4월 18일부터 기 발생한 장애인 복지할인 미적용 금액 및 이에 대한 각 요금이 납부된 날로부터 실제로 금원을 지급하는 날까지 연6%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2017년 4월 18일까지 2017년 11월 30일까지 발생한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65,412원 및 이에 대한 각 요금이 납부된 날로부터 실제로 금원을 지급하는 날까지 연6%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할 것입니다. 나머지 신청인의 청구는 이의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몇 가지 확인하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대리인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제가 직접 나이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60대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고령이라고 들었는데 국가시험을 준비했는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것 때문에 불합격을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 달라는 부분도 눈에 띄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물론 개인의 권익이 침해를 받았으면 정말 소중하게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개인이 정신적 피해보상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몇 억 정도 요구하는

사항들은 그것을 우리 행정부에서 가뜩이나 인력도 부족한, 또 처리해야 할 업무도 많은데 사실 중재가 어렵습니다. 대형 통신사와 한 개인 간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알선해서 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개입해서 결국은 조정이 안 돼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 아닙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맞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것이 자칫 한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소홀함이 없어야 되고 또 대형 통신사의 횡포가 없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자칫하면 우리 행정력이 너무 사용되면 정말 다른 일을 못 할까 두렵습니다. 개인 민원이 제기될 때 위원회까지 올라오는 기준이 있습니까? 손해배상 청구액이….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면 재정신청이 접수되고 1차적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을 저희가 구두 또는 문서로 확인하고 양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담당 공무원 수준에서 촉구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알선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중재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최종적으로 재정 안건을 작성해서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애초에 관계없이 모든 것이 다 위원회로 올라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곽진희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신청인이 청구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면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대부분 개인이 민원을 제기할 때 1,0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전부 우리 위원회에 이것을 다 심사를 거쳐야 한다면 너무 많은 행정력이 들어가지 않느냐, 저는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어차피 양자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알선하고 또 중재하는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김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안건도 재정에 관한 건이지 않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재정 제도는 수월성 때문에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있을 경우 이것이 행정기관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법원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것이 있고 우리는 소속기관이 없습니다만 소속 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제출 부실 문제, 또 추가 확인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안 하나하나를 이렇게 면밀히 들여다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 민원인들은 억울함이 있고 뭔가 불편함이 있으니까 정부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행정의 효율성도 생각하고, 또 민원인들의 민원내용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 정부는 사람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판별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 예를 들어 우리가 타 기관과 업무수탁계약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께서 이것을 일일이 살펴보는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면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갖추어 놓는 것은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의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하고, 그중에서는 또 방통위 차원에서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정비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통신사업법상 재정 신청은 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두 번째로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에 대해 모두 재정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방통위에서 정부입법안도 제출하고 또 민경욱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분쟁조정 신청을 통신 분야에 도입해서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한 사항이 작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들이 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더 신속하고 또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이미 준비가 되고 있고, 다만 지금까지 신청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과 고삼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봅니다. 제4기 방통위의 비전이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자보다 국민의 입장을 먼저 살피는 정책을 추진해야겠다는 뜻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입니다.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정신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즉, 국민이 주권자임을 나타낸 것이라면 공화주의는 공동체 안녕과 공익을 시민 개개인의 이익보다 중시하는 시민적 덕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국민의 권리 보호와 손실 보상이 사회적 통념과 법적 기준을 넘는 수준에까지 이를 수 없는 일입니다. 상정된 안건을 살펴보면 알선(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적정하다고 판단됨에도 결과적으로는 재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의결주문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법적기준과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과도한 자기의 주장은 공동체 이익을 우선시 하는 그리고 사회적 균형을 중시하는 선에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결주문을 원안대로 받고자 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이 건은 원안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용자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사업자들이 보다 면밀하게 운영을 해야지, 결국은 이 가운데 일부는 사업자의 하자가 드러난 것 아닙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 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해 달라는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라. 케이티파워텔㈜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손해배상 재정에 관한 건 (2018-08-50)

○ **이효성 위원장**

- 이어서 <의결안건 라> '케이티파워텔㈜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손해배상 재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 케이티파워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재정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재정신청 취지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일방적 TRS 기지국 철거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게 된 사항에 대하여 기존 TRS 무전기가 이용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불가할 시 징벌적,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00억원을 보상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년 4월 8일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TRS무전통신서비스를 개통하고, 6월 12일 피신청인은 LTE무전통신 서비스 전환 추진 내용을 신청인이 소속되어 있는 트리콜대리운전에 공문으로 발송하여 알렸습니다. '15년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트리콜대리운전은 소속기사에게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 사실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16년 7월 피신청인은 신청인 거주지역 주변의 기지국을 철거하였습니다. 이 거주지역은 경남 진해 용원동 기지국을 말함이 되겠습니다. '17년 4월 24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고객센터로부터 기지국 철거로 TRS서비스이용불가 안내를 받고 민원을 제기하고, '17년 11월 9일 재정을 접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인의 주장과 피신청인의 주장, 일방적 기지국 철거, 부당요금 청구, 기존 단말기 지속 사용, 손해배상 사항에 대해서는 적시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판단입니다. 일방적 기지국 철거와 관련 사항입니다. TRS서비스 중단 및 LTE서비스 전환은 계약상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해당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신청인의 대리운전회사를 통한 고지는 서비스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대리운전회사의 공지수단인 앱은 대리운전회사와 신청인 간의 이용관계를 위한 것이지, 피신청인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앱이 아니므로 신청인에게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15년 5월에 LTE무전기를 개통한 시기는 피신청인이 대리운전회사에 공문을 발송한 '15년 6월 12일 이전이므로 이를 사전고지에 대한 근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 기기의 지속 사용 여부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모토로라의 사업철수로 인하여 TRS서비스 제공이 불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LTE 무전서비스를 자체 개발하여 무전서비스를 제공한 사항으로, 피신청인의 TRS 사업 철수 이유 등을 고려했을 때 이미 철거한 기지국을 재설치하여 기존 TRS기기 사용 유지를 주장하는 신청인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부당요금 청구와 관련하여 요금은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납부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TRS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납부한 요금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관련 사항입니다. 피신청인은 사전고지가 불충분했던 것에 대하여 약관 제26조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요금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경남 진해 기지국이 철거된 '16년 7월 29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신청인이 납부한 요금의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TRS서비스 이용약관 제2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신청인이 서비스 제공 불가를 인지하고도 계약을 유지한 기간 동안 발생한 요금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인지시점인 '17년 4월 24일 이후 요금은 손해배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나머지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 징벌적, 재산적, 정신적 손해 100억원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결정사항입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TRS무전서비스 계약을 즉시 해지하도록 하고

신청인에게 LTE무전서비스를 안내하여 계약을 원할 경우 단말기 교체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6년 7월 29일에서 2017년 4월 24일까지 발생한 요금 110,410원에 대한 손해금 331,230원을 지급하고 2016년 7월 29일부터 계약해지시점까지 납부된 요금 및 이에 대한 각 요금이 납부된 날로부터 실제로 금원을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할 것, 나머지 신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와 통신사업자 간의 재정사건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재정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이용자와 통신사업자 간 재정사건은 향후 서면의결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번 건도 아까 SK텔레콤㈜에서 봤듯이 어쨌든 개인 이용자와 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액수가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해 달라고 해서 100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자가 잘못한 부분은 사전고지를 제대로 못했 다는 부분이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데 녹취록을 보면 삐삐처럼 오랫동안 자기가 보관하고 있으면 이것이 나중에 골동품이 되어서 값이 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는 계속 가지고 있겠다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모토로라라는 사업자가 철수하는 바람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용자가 이것을 수락하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를 해야 하는데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100억원이라는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까지도 보상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무처에서 판단한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으로 이런 것에 너무 행정력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것을 효율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법안도 빨리 정비가 되어야겠지만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 어쨌든 이용자에게 피해는 가지 않고 사업자 횡포를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우선 사무처 판단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혹시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1. 보고사항

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방송기반국 소관인 <보고안건 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동철 방송기반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입니다. '16년 11월 30일 김정재 의원 등 10인께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률개정안 주요 내용은 방심위의 자료제출 요구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고, 요구 대상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 그리고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방심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불응할 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동 법안은 2018년 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중에 법률개정안이 공포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을 신설합니다. 상위법, 즉 방통위 설치법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제출 요구 관련 과태료 조항이 신설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방송법」상의 자료제출 의무 위반 시 기준을 준용하여, 시행령에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항 및 별표 1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신설 내용은 개정령(안)을 보면 제14조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는 내용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를 보면 일반기준으로 가중 및 감경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 700만원입니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그리고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해당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나목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늘릴 수 있다는 내용이고, 다음에 <1>번을 보면 위반행위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이 경우에는 직전에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 즉 700만원까지 늘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개별기준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일정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4월에 규개위의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5월 중으로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가. 행정조사 정비를 위한 법령 일괄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공개 안건 마지막 순서로 기획조정관실 소관인 <보고안건 가> ‘행정조사 정비를 위한 법령 일괄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최성호 기획조정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 최성호 기획조정관

- 행정조사 정비를 위한 법령 일괄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유는 위원회 소관 법령상의 행정조사 중 일부가 자료제출 요건이 추상적·포괄적이거나 사전통지 기간이 짧아 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국민권익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경과사항을 말씀드리면 국조실에서 각 부처의 행정조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통지했으며, 저희는 이에 따라 방통위 소관 행정조사 정비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행정조사 정비계획을 국조실에 제출하고, 입법사항이 필요한 것은 입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방송법」제35조의5제3항에 경쟁상황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건이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경쟁상황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방송광고판매대행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사실관계 조사와 관련한 자료제출이 포괄적으로 자료제출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36조에 근거하고 있어, 금지행위 조사의 경우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의 목적·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료제출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이고, 이러한 자료제출 요건 구체화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를 반영하여 방송통신사업자에 통계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기간을 5일 이상에서 7일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를 반영하여 위원회가 재정사건 처리를 위한 당사자 의견청취 시 출석요구 통지일을 출석일 5일 전에서 7일 전까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안건을 접수해 주시면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제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보고된 안건 자체가 다 타당하다고, 또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받고자 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비공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 의결사항

가.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 (2018-08-47) (비공개)

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건 (2018-08-048) (비공개)

8.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혹시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 **표철수 상임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공영방송 이사를 이렇게 단기간에 여러 사람 보궐 선임하거나 추천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공영방송 이사들을 보궐 선임하거나 추천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품위 문제 이런 것도 제기된 바 있었고, 또 불과 얼마 전에 인선한 이사를 다시 보궐해야 하는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인선을 할 때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사 인선 때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인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사 선임 문제로 방통위원이 회의에서 퇴장을 하는 이런 모습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운영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데 대해 자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퇴장하신 것에 대해 위원장인 저로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김석진 위원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좀 더 원만하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차기 회의는 2월 21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8년 제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32분 폐회 】